

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1. 10.

농림축산식품부
(농촌산업과)

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시 운영계획서에 생산품 판매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나,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생산품 판매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(안 제48조제1항 제1호나목)
- ☐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하는 생산품 판매 계획을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생산품 판매계획(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1항의 개정

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8조(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)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(이하 “농어촌관광휴양지”라 한다)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해야 한다.	제48조(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가. (생략) <u>나. 생산품 판매계획</u>	1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생산품 판매계획(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)</u>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